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08
----------	------

제출일자 : 2025. 8. 29

제출자 : 달성군의회



1. 제안이유

여성가족부 「2021년 가족사업안내」 지침 개정(21. 10. 13. 시행)에 의거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명칭을 일치시키고,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여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현 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센터 설치·운영 조례

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조제1항)

다. 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안 제10조제3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5조의2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5. 7. 25. ~ 8. 14.)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로, “강화하고자 설치하는”을 “강화하기 위하여”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을 “달성군 가족센터의 설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거주하는”을 “주민등록을 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5조”를 “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달성군 가족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군수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

칙적으로 공공시설 내 센터를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제6조제3항 중 “최소 2인 이상(다기능화센터)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이어야”를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정사를 센터종사자로 두어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된 센터는 이 조례 제3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설치)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소에 센터를 설치한다.

제4조(업무·기능) ① 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략)

<신 설>

- 6. (생략)

- ② (생략)

제6조(조직) ①·② (생략)

-----.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
----- 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달성군 가족센터---.

② 군수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공시설 내 센터를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업무·기능)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 7. (현행 제6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 ④ (생략)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5. 4. 22.]

[시행일: 2025. 10. 23.] 제35조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22.]

[중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25. 4. 22.>]

[시행일: 2025. 10. 23.] 제35조의2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중략)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참 고 자 료

□ 「2021년 가족사업안내」 지침 개정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3605호(2021.10.12.)회]

- 추진 목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 주요내용
 - 명칭사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족센터”로 변경
 - 시 행 일 : 2021. 10. 13.